

전주지방법원 2022. 2. 9 선고 2021가단20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. 19.

판 결 선 고 2022. 2. 9.

주 문

1. 전북 임실군 D 대 354㎡ 중 1/4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E이 2020. 2. 26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E에게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20. 2. 26. 접수 제2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9. 28. F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2015. 4. 23.자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. 9. 30. 위 법원으로부터 'E은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,280,868원 및 그 중 45,299,647원에 대하여 2019. 9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전북 임실군 D 대 354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는 H의 소유였는데, H은 2001. 10. 30. 사망하였고, 그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, E, I 및 J은 2020. 2. 26.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고,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게는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E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이 상속지분(1/4지분)을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,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.

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K조합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후

E 등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,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,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며,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, 당시 피고의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곽경평